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113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박세미, 백인화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아

변론 종결2024. 10. 8.

판결 선고2024.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812,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9.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6. 26. E과 혼인하였고, 원고들은 망인과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1. 1. 24. E과 이혼하고, 2019. 12. 16. 피고와 재혼하였다. 망인은 2023. 5.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23.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2023.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2005. 3. 11. F 주식회사의 G보험 및 2009. 1. 15. H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23. 5. 26. 위 G보험금으로 32,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H보험금 4,255,888원은 미수령 상태이다.

망인은 2014. 4. 16. I 주식회사의 J보험 및 2015. 11. 12. K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피고를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23. 5. 18. 및 2023. 5. 30. 위 보험금으로 각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에게 2023. 4. 19. 16,000,000원, 2023. 4. 24.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망인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예금	L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7	을 제37호증
2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480		
3	M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120,007		
4	N조합(O)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3,703,001		
5	N조합(P)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4,678,039		
6	차량	싼타페 (차량번호 1 생략)	8,700,000	갑 제15호증 을 제34호증
7	토지	경상남도 의령군 Q 답 367m ²	1,104,670	을 제33호증의 1
8	경상남도 의령군 R 답 783m ²	2,356,830	을 제33호증의 2	
합계	20,663,03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7, 12, 13, 15, 18호증, 을 제1, 33, 34, 37, 40,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특별수익을 얻었다. 즉 ① 2023. 4. 10. 시세 330,0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② 2023. 4. 19. 및 2023. 4. 24.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6,000,000원 중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14,699,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300,980원을 증여받았으며, ③ 망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 72,000,000원을 수령하여 증여받고, 미수령 보험금 4,255,888원을 증여받았다.

위 각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부족액 각 58,812,026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2)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참조).

3)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을 제2~30, 39, 41~4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및 보험금은 사실상 피고의 재산이거나 피고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일 뿐, 상속분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망인과 전처 E 사이의 자녀들로 망인과 E이 이혼한 2011. 1.경 이후로 망인과 교류를 단절하였고, 망인이 2023. 5. 18. 사망할 때까지 12년간 망인의 생활비나 치료비 분담 등 망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는 2011년경부터 망인을 알게 되고

2014년경부터 망인과 교제하며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여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 오다 2019. 12. 16. 혼인 신고를 하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암투병을 하는 망인을 보살피며 부양하였다.

2) 망인은 2016.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195,400,42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9,000,000원과 대출금 55,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21,400,420원은 다음과 같이 모두 피고가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보유하던 김해시 상가를 2009. 12. 15.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2. 14.경 김해시 S아파트 T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2014. 9. 23.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S아파트 U호를 138,5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10. 21. 위 S아파트 U호를 V에게 105,000,000원에

매도하고 받은 돈과 피고 돈 15,478,910원 및 피고 사위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합하여 망인과 함께 생활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 잔금 121,400,420원을 납부한 것이다.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2011년경부터의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S아파트 U호는 사실상 피고가 망인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결국 피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은 망인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위 S아파트 U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36,000,000원을 받았음은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가 마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돈이 사실상 망인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원고들과 교류를 단절한 2011년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6년경 피고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대금 대부분은 2019. 12.경 피고가 모두 납입하였으며, 한편 대출금 55,000,000원은 망인과 피고가 그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이를 변제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그 형성에 대부분 기여한 실질적인 피고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망인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무상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23. 4. 19. 및 24. 피고에게 합계 46,000,000원을 송금한 점(피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대출금 잔금 14,699,020원을 변제하였다), 망인이 납입한 보험금 72,000,000원을 망인 사망 이후 피고가 수령하였고, 남은 보험금 4,255,888원의 수익자가 피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수년간 망인과 함께 생활하며 대부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공동생활에 제공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들의 도움 없이 투병하는 망인을 홀로 보살피며 부양하였다. 망인도 위와 같이 여생을 함께한 피고에게 그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사망 직전에 위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이를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형평을 깨뜨린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주진오

별지